**Meteor Senior 21st**

**<팀 구성>**

Meteor Senior 팀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외국어 봉사단으로

1학년부터 4학년까지 대학생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.

**<주 활동>**

1.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외국인들과 함께 투어(매월 1회, 2개월 당 3회 이상 필수)

- 21기의 경우,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투어 2달에 3회&한 달에 최소 1번 => 미티어 활동을 한 달에 최소 1번으로
※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, 제 4장 11조에 따라 21기의 활동 조건을 완화한다.

2. 매월 2회의 동아리 회의 참가(격주 토요일)

**<내부 부서>**

1. 기장 &부기장

대내적으로, 각 부서의 활동을 감독 및 총괄하며 미티어들의 친목을 위해 힘쓴다. 대외적으로는 미티어를 대표하여 활동한다.

2. 기획부 - 동아리 내 행사기획(MT, 홈커밍데이, 소풍 등), 단체봉사 기획, 장소 섭외, 친목도모 이벤트 기획   (이미지데이트, 친해지길 바라, 각종 뒤풀이 등)

3. 재무교육부 - 동아리 재무관리, 동아리 지원사업    교육업무(영어스터디 미투미투, 투미투미 진행)

4. 관리부 - City tour 컨택 및 진행양식 제작, 체계적인 DB 관리로 tourist 국적 및 언어 통계, 투어 만족도 조사서 관리

5. 홍보부 - 홍보 포스터, 정기회의 사진 촬영 및 포스팅, 행사들 블로그 포스팅, Meteor 단체티 제작.

(명함, 로고, 북마크 제작, Meteor 단원 프로필 제작), 홍보영상 제작

6. TF - 기장단을 중심으로 미티어를 대표하여 대외 협력과 홍보를 담당

제 1장. 총 칙

제1조 [명칭]

① Meteor Youth Volunteer Club(이하 Meteor)은 별똥별, 즉 유성을 의미한다. 별똥별을 보며 꿈과 희망을 갖듯, Meteor는 봉사를 통해 다른 이들의 꿈과 희망이 되어주는 청소년들의 봉사 동아리이다.

② Meteor, 미티어 두 가지로 불러도 무관하며 필요에 따라 약칭 및 애칭을 정할 수 있다.

제2조 [목적]

① Meteor Youth Volunteer Club의 목적은,

- 교육격차 및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 해소 (무료 영어 교육 봉사 활동)

-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(기타 다양한 단체 봉사활동)

- 한국의 이미지 제고 (서울 투어 가이드 봉사활동)로 한다.

제 2장. 회 원

제3조 [자격요건]

① Meteor의 대상은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대학생(시니어)이면 누구나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. 서울, 경기 지역에서 진행되는 동아리 정기 모임 (격주 토요일 16-18시)과 2달 중 3회의 시티투어 봉사에 참여 가능한 대학생은 누구나 Meteor회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.

② Meteor는 학력과 나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,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 편견에 의해 Meteor의 구성원을 선발할 시, 엄벌로 영구 활동권 박탈 및 접근금지에 처한다. (전문대와 일반대학의 차별을 금한다.)

③ Meteor는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또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를 원하는 모든 대학생을 위한 동아리이며, 학벌이나 점수가 아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와 영어회화 실력만을 요구한다.

제4조 [회원구분]

다음 각 호는 Meteor의 회원구분 단계에 해당한다.

① 준회원(예비 METEOR)

클럽의 존재를 인지하고 클럽에 가입하여 운영진의 동의를 얻어 클럽활동의 기회를 얻은 자

② 명예회원(OB METEOR)

Meteor의 모든 커리큘럼을 성실히 이수, 수료한 자

③ 정회원(YB METEOR)- 일정한 기수선발모집에서 최종 합격한 자- 합격 후 최소 6개월(혹은 매 기수 활동기간)간 활동이 가능한 자에 限한다.

④ 운영진(부장 METEOR)- 기장, 부기장인 자(각 1인, 총 2인)-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: 기획부(3인) / 홍보부(2인) / 재무교육부(2인) / 관리부(2인)

20기부터 기획부는 차장 2인으로 총 3명

제 3장. 동아리 운영방침

**제5조 [활동권 박탈]**

① 첫 달 4회 필참 기간에 지각 및 결석할 시.

② 총 8번의 활동모임(총 16주 중, 시험기간 3주 제외) 중 3회 이상 결석 시

\*지각 3회는 1회 결석으로 하고, 공식 사유가 인정되는 결석일 경우(8조의 2 참조) 벌금은 면제되나 결석 1회로 처리한다.

③ 활동 도중에 사유 없이 활동취소를 선언한 자

④ 활동 도중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만두게 된 자. (예비 METEOR로 강등)

⑤ 각 종 벌금을 한 달 이상 미납한 자.

⑥ 운영진 판단 하에 METEOR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자.

제6조 [출결 관련 - 구체적인 사항]

① 각 기수 첫 달 4회 필참 기간 – 지각 및 결석 시, Meteor 활동권을 박탈한다.

(1주 : OT & 부서 소개, 신입 기수 자기소개, 부서결정 / 2주 : 모의투어

/ 3주 : 모의투어 발표 보고 및 운영진 선발/ 4주 : MT)

* 22기의 경우,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하여 첫 달 필참 기간은 3회

② 해당 기수 회비는 50,000원이다. 4회 필참 기간 이후 회비는 반환 불가하다.

수료증은 가입한 달을 포함하여 7개월간의 전체 임기 기간 동안 성실히 참여하여 활동 의무사항을 준수하였을 경우에만 수여한다. (매년 2월, 8월 활동증명서 발급)

④ 기수 별 활동 기간은 1개월(수습 회원), 5개월(정식 활동), 1개월(차 기수 선발)로 정한다.

* 22기의 경우,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식 활동기간은 5 → 4개월로 줄어듦

⑤ 임기를 마친 회원들은 다음의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- 기수 활동기간 중 제 5조의 사항에 위반하지 않고 수료를 충족 한 인원에 한해, 다음 기수를 연임하여 운영진/부원으로 활동한다- 수료증을 받고, 동문으로 남아 Meteor의 활동을 지원한다. (OB)

제7조 [활동권 박탈 통보]

① 운영진은 자격정지나 활동권 박탈에 해당하는 동아리 구성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통보해주어야 한다.

② 운영진은 자격정지나 활동권 박탈 조건에 임박한 동아리 구성원에게 사전에 경고를 해줘야 한다.

제8조 [모임출석]

① 모임에 출석하려면 적어도 모임 전날 자정까지는 출결게시판에 참석여부를 알리고, 불참할 시에는 불참 사유를 함께 남기도록 한다.

② 위를 필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경고를 면할 수 있다. 불참 사유는 회의 당일 토요일 밤11:59 까지 올려야 한다. 불참사유를 회의 당일 토요일 밤 11:59분까지 올리지 않을 경우, 무단결석으로 간주하여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가 적용된다.

③ 회의 전날 자정까지 출결담당에게 출결변동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, 무단지각 및 결석, 조퇴로 간주하여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가 적용된다.

* 회의 당일 출결이 바뀔 경우에는 재교부장에게 먼저 알린 후 카페에 출결 수정 및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. 이 역시 토요일 밤 11:59분까지로 따른다.

제8조의 2 [결석 예외 사유]

다음 각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이 면제되며, 회의 당일 밤 11:59까지 재교부장에게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①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시(병원 진단서 필요)

② 학교 시험, 국가 공인 시험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(주요 시험 전날이 정기회의 날이면 예외사유 인정)

③ 친인척 경조사(결혼식 및 장례식)에 해당하는 경우 – 장례식의 경우 서류를 제외하기로 한다.

④ 운영진 판단 하에 예외 결석 외에 사항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음

제8조의 3 [예고지각]

① 예고 지각할 시에는 사전에(12시까지) 공지한다.

제8조의 4 [조퇴]

① 조퇴할 시에는 조퇴 사유를 함께 남기도록 한다.

② 위를 필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조퇴가 인정된다.

③ 조퇴는 전체 일정시간의 1/2에 해당하는 시간 이후에 허용하며 이에 대한 예외 조항은 없다. 사유가 인정된 조퇴 시에는 벌금 1000원만을 부과한다.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, 무단조퇴 및 무단결석으로 간주한다.

제9조 [활동인원 및 기간]

① 각 기수는 신입 인원 35명 이내를 기준으로 하여 운영하며, 각 기수별 연임 인원은 수료자에 한하여 3명으로 한다.

② 각 기수 별 의무 활동기간은 7개월로 한다.

③ 선 기수는 2월부터 8월까지, 후 기수는 8월부터 2월까지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 22기의 경우,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하여 3월부터 8월까지 활동한다.

제10조 [동아리 재정운용]

① 회비는 기수 시작 시에 지불하며 신입기수는 50,000원으로 정한다. 회비는 4주 필참 기간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이 불가하다. 이는 입회금 원칙에 준수하며, 동아리 원으로서 존중된 서약의 의미가 있다.

② 회비로 구성된 동아리 재정운용금은 동아리 활동 및 부수적 활동에 사용된다. 이때, 재정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재무교육부에서 가장 우선권을 갖는다.

③ MT비, 기타 부수적인 공식 활동 및 친목도모 활동에 있어서 동아리재정금의 활용은 기장단과 재교부장의 승인이 있을 시에만 인정된다.

④ 동아리 재정 운용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매 기수 활동에 따라 기장단과 재교부장의 협의에 따라 유동성을 인정한다.

제 4 장. 동아리 활동

제11조 [외국인 투어관리]

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투어를 통해,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① 투어 봉사는 1기수에 7회 이상 참가하는 것을 필수로 한다. (2달에 3회 필)

- 20기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투어 제약에 따라, 7 => 6회 이상으로 수정한다.

※ 21기의 경우,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활동 제약에 따라 6 => 5회로 축소

- 2달에 3회 투어를 참가하지 않을 시, 예비 Meteor로 강등된다.

- 단, 연속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달에 1회 이상 투어를 해야 한다.

- 21기의 경우,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투어 2달에 3회&한 달에 최소 1번 => 미티어 활동(유튜브, 단체봉사, 모의투어 등)을 한 달에 최소 1번으로

※ 20년 11월,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하여 21기 미티어 활동에 무리가 있음을 판단하여, 이 사항은 20년 12월부터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.

- 수습회원(2/8월) 동안 시행한 투어는 정식회원 활동 기간에 활동한 것으로 인정한다. 단, 3회까지만 횟수를 인정해준다.

- 투어봉사는 3시간 이상 참여할 경우에만 횟수를 인정해준다.

- 투어리스트의 과실로 취소된 투어의 횟수는 인정해준다.

-투어리스트가 당일 취소 통보

-연락 없이 30분 이상 늦을 시, 가이드 판단 하에 해당 투어를 취소할 수 있다.

 - 정기회의와 투어가 겹칠 시, 회의를 우선으로 한다. 회의 불참사유에 투어는 인정되지 않는다.

② OB 역시 투어에 참여할 수 있으나 본 기수의 투어 참여 독려를 위해 OB는 1달에 1번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. (한 달에 한 번의 기준이 부원당 횟수가 아님을 명심한다. OB 중 한 명이 3월에 투어에 참여했을 시 다른 OB는 3월 참여가 불가하다.)

제12조 [단체 봉사활동]

Meteor는 봉사를 통해 사회에 공헌함을 목표로 한다.

① 기수 임기당 기획부에서 매달 1번씩 사회 공헌에 상응하는 사회적 이벤트를 실시한다.

 단체봉사의 참여는 자율이며 단체봉사 참여시 투어 1회로 인정을 해준다. (단체봉사 충족요건: 4명이상; 투어로서의 인정은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다)

 최소 1번의 참여는 독려한다.

② 단체 봉사와 투어가 겹칠 경우 한 가지만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.

제13조 [주니어 봉사활동]

① Meteor 시니어는 Meteor 주니어의 멘토로서 주니어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, 연결해 준다.

② Meteor 시니어는 Meteor 주니어의 멘토가 되어 신의성실을 다해 도움을 준다.

제14조 [기타 활동]

① 단체 활동, 기타 이벤트적 활동은 회원들 간 합의에 따라 진행한다.

21기의 경우 외국인 투어에 제약이 있어 회원들 간 합의하 유투브 활동, 모의 투어 등 활동을 진행한다.

② 각 기수 별로 홈커밍데이를 진행한다(선 기수 5월 / 후 기수 11월)

상황에 따라 홈커밍데이의 취소도 가능하다. 20, 21기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진행하지 않음

제15조 [Penalty]

① 결석

- 무단결석 시, 8,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.

- 결석예외 사유에 해당 시, 벌금을 면제한다.

- 모든 결석 3회 시, Meteor의 활동권을 박탈한다.

② 지각

- 모임에 지각할 시 10분 단위로 1,000원씩 부과한다. (기준 시간은 출결담당시계)

- 사유 없이 전체 회의시간의 1/2 이상 지각할 시, 무단결석으로 간주한다.

- 3회 지각 시 결석 1회로 간주한다.

**③ 미게시**

- 출결 게시판, 공지에 올라오는 투표, 지각/결석 사유게시판에 글을 올리지 않을 시, 1,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. 단, 운영진 판단 하에 확인이 필요한 게시글 또는 단체 활동 모임의 경우 최대 5000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- 기획부 공지게시판에 회의 3일 전까지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공지하지 않을 경우, 기획부 인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3,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.

- Meteor 블로그에 행사 후, 5일 내에 게시글을 작성하지 않을 시, 홍보부 인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3,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.

- **정기회의 후 회의록**(관리부 작성)을 Meteor 전체 회의록 게시판에 2일내에 공지하지 않을 시, 관리부 인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3,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.

- 미투미투 영어 스터디 진행 후, 3일 내에 게시글을 작성하지 않을 시, 재교부 인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3,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(카페에 올리라고 공지하기)

- 정기회의 후, 2일 내(월요일까지)에 벌금 내역을 공지하지 않을 시, 재교부 인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3,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.

-투어 후기 작성이 1주일 이상 지연될 시 차등적으로 벌금을 부과한다. 이는 재교부 차장이 관리하도록 한다.

(투어일 포함하여) 7~13일-3000원, 14~20일-6000원, 21일~27일-9000원

예를 들어) 2/14일에 투어를 진행했을 시, 2/19일까지 후기를 마무리하여야 벌금 면제가 되며 2/20일부터는 투어일 포함하여 7일째가 되므로 벌금이 부과된다.

④ 납부

- 벌금은 재교부 ‘출결 및 댓글 담당자’에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‘출결 및 댓글 담당자’는 벌금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, 재량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.

- 벌금 납부자들은 해당되는 벌금을 기한까지 납부를 해야 하며, 기한이 지날 경우 하루에 500원의 추가 벌금이 발생한다. 벌금 납부기한은 벌금 공지일을 포함하여 3일까지이다.

- 벌금을 한 달 이상 미납부시 활동권 박탈의 사유에 해당된다.

- 기장단이 불시에 벌금 현황을 확인 후 벌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을 시, 미징수된 금액을 걷고 벌금 담당자도 **페널티(담당자에게 벌금 3천원)** 부과된다.

제 5 장. 부서/조직

제16조 [운영진 선출]

① 기장단을 제외한 운영진은 각 부서에서 투표를 통해 동등하게 선출한다.

② 투표 당일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최종적으로 운영진이 선출된다.

제16조의 2[투표권]

① 투표권은 해당 기수 구성원들 모두에게 주어진다. 단, 투표권은 투표 당일 회의 참석 시 행사할 수 있다.

제17조 [기장단]

기장단은 기장과 부기장으로 구성한다.

① 기장

- 기장은 동아리 운영의 총체적 관리 권한을 지니며, 동아리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.

- 각 부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동아리 운영을 원활히 하며, 중대한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.

- 동아리 사무의 권한 위임을 통해 각 부서에 적절한 업무배정과 부서간 관계 조정을 통해 동아리 운영에 심혈을 기울인다.

② 부기장

- 부기장은 기장을 도와 동아리 운영에 부수적인 관리를 맡는다.

- 기장 부재 시 기장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기장의 권한은 부기장에게 전권 위임한다.

- 부서장과의 협의와 조정에 주업을 두며, 철저한 동아리 구성원 관리에 심혈을 기울인다.

③ 운영진

- 운영진은 기장단과 각 부서의 부장들로 구성된다. (부장이 참가 불가능한 경우, 차장이 권한을 위임 받아 참석한다.)

- 기장단을 제외한 운영진은 기장단을 도와 부원들이 주도적으로 동아리 활동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.

- 운영진은 온•오프라인으로 꾸준히 연락하여, 각 부서 업무 진행사항을 공유하도록 한다.

제18조 [기획부]

① 정기회의 및 기타 모임 장소 섭외, 홈커밍데이, MT, 소풍 등 동아리행사 기획, 기타 연계사무를 본업으로 한다.

② 중대한 동아리 사안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구체적 활동사항에 틀을 제공해야 한다.

③ 기획부는 적어도 회의 3일 전(수요일)까지는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공지해서 동아리 회원들의 편의를 추구해야 하며, 이를 어길 시 기획부 전체에게 일괄적으로 3,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.

제19조 [홍보부]

① 동아리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, 클럽관리, 동아리를 홍보하고 차후에 있을 차기수 모집을 주도한다.

② 다양한 PR 홍보 전략을 구상하여 동아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③ 홍보부는 회의 및 행사 시 사진, 동영상 등을 찍고, 블로그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. (게시는 행사 후, 5일 내에 완료한다. 이를 어길 시, 홍보부 전체에게 일괄적으로 3,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.)

④ 홍보부는 각종 동아리 후원 사업에 지원 시, 재무교육부와 함께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홍보물을 제작한다.

제20조 [재정/주니어/교육부]

①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결정하고 활동기간 중의 동아리 재정의 입출금 및 결산을 담당한다. 동아리 행사에 필요한 재정은 관련 부서가 재교부장, 기장단과의 협의를 통해 지출하며, 최종 권한은 재교부장에게 있다.

② 각 회원은 재교부장에게 동아리 관련 지출의 승인을 받은 후 재정을 사용하도록 하며, 영수증을 필히 제출하여 확인 받도록 한다.

③ 재교부에서는 ‘출결 및 댓글 담당자’를 선발하여, 담당자로 하여금 지각 및 결석, 댓글을 체크하여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한다.

④ 재교부는 ‘영어로 진행되는 베스트 투어 발표’(미투미투)와 ‘영어로 진행되는 스터디를 진행한다. 미투미투 담당자는 매 정기회의 일주일 전에 발표자와 발표주제를 공지한다. 이때, 미티어 전체가 발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조정하여 먼저 지원자를 받은 후 남은 명수는 무작위로 지정하여 공지한다. 발표자는 15-30분 이내로 발표 및 스터디 자료를 준비하도록 한다. 발표 후 조별로 모여 회화 스터디를 진행하도록 한다. 이 때, 조는 미투미투 담당자가 매번 실력을 고려하여 정한 후 공지한다.

제21조 [관리부]

① 관리부는 외국인 투어 담당업무에 신의성실을 다하도록 한다.

② 외국인과의 연결 업무

- Q&A 관리 : 외국인들의 투어관련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담당한다.

- DB관리 : 투어를 받은 외국인들의 DB와 Meteor의 DB를 담당한다.

- 투어게시판 담당 : 투어 게시판 담당자는 외국인들이 보낸 메일을 클럽에 게시하도록 한다. OB도 한달에 한 번 컨택과 ‘가능’ 댓글을 통해 투어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14기까지 있었던 동문투어를 대신한다. 단, 한 팀당 OB회원은 최대 2명으로 제한한다.

- 만족도 조사서 관리 :　투어가 끝난 후 외국인들에게 받은 투어 만족도 조사서의 관리를 담당한다. 또한 익명 조사서를 만들어 미티어 단체의 개선점을 알아내어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③ 관리부에서는 Meteor 외국인 공용 SNS 계정을 담당하여 활성화시킨다.

④ 매 정기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, 3일내에 Meteor 전체 회의록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하며, 이를 어길 시 관리부 전체에게 일괄적으로 3,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.

제22조 [신의성실]

① 모든 부서의 부장과 부원들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한다.

② 뒤풀이 및 친목도모 행사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, 참석하도록 한다.

③ Youtube 채널 기획은 홍보부 주도하에, 모든 인원들이 참여하도록 한다.

④ 각종 Meteor 계정 관리에 모든 인원이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.